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[별지 제13호서식] <개정 2024. 7. 18.>

# 본 인 부 담 금 수 납 대 장

| 연월일 | 환자성명 | 수납금액(원)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계 | 요양급여 | 비급여 |
| | | | | |

주

1.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퇴원일에 총본인부담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.
2. 요양급여에는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별표 6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포함합니다.
3. 환자가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환자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70g/㎡(재활용품)]